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1. 7.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근로자에게 건강한 일터 제공과 좀 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사전예방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의2 제2항에 단서조항 “단,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를 신설한다.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제4조의2(건강도시 브랜드 사업) ① 시장은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건강한 일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물리적 작업 환경영역과 개인건강자원영역 2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건강한 일터 인증을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4조의2(건강도시 브랜드 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단, 불법경영, 산업 재해,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강한 일터 인증제”란 건강도시 생활터 사업의 일환으로 구미시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 사업장 중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제고를 위하여 물리적 작업환경과 개인건강자원 영역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장을 건강한 일터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6. “물리적 작업환경”이란 사업장의 재료, 공정, 구조, 공기, 기계, 가구, 소음, 조명, 화학적·전기적 위험도,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 등 사업장의 부분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처해있는 환경 및 조건을 말한다.
7. “개인건강자원”이란 기업이 근로자들의 생활습관 개선 및 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건강서비스, 정보, 자원, 기회 및 유연성 지지적 환경을 말한다.

제4조의2, 제7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강도시 브랜드 사업) ① 시장은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건강한 일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 ② 시장은 물리적 작업환경영역과 개인건강자원영역 2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건강한 일터 인증을 할 수 있다. 단,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③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건강한 일터 인증 심사위원회) 위원회는 제4조의 2에 따른 건강한 일터 인증제의 심사·심의와 전문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한 일터 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2(건강한 일터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한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서를 수여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심사에 사용되는 비용 중 신청기업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2.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시 우대업체로 선정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